

## 증평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[ 2007. 11. 23 ] 조례 제265호

전부개정 2011. 4. 29 조례 제373호  
일부개정 2012. 2. 24 조례 제412호  
(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)  
일부개정 2013. 11. 8 조례 제506호  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  
일부개정 2013. 12. 26 조례 제514호  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  
일부개정 2018. 12. 14 조례 제839호  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  
일부개정 2020. 8. 7 조례 제931호  
(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 
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)  
전부개정 2021. 10. 8 조례 제988호  
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명주소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소정보의 사용 확대)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.

1. 도로명: 모든 도로의 명칭
2. 도로명과 기초번호: 「도로명주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
3. 도로명주소: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축물 또는 구조물(이하 “건물등”이라 한다)의 위치표시
4.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: 법 제22조제6항 외에 증평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서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·변경의 기초단위
5. 국가지점번호: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 표시
6. 사물주소: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

제3조(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)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을 교부·재교부하는 경우에 제작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
1.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에
2.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
3.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.

③ 군수는 교부·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4조(광고의 비용)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무료
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
- 나.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
- 다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유료: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 금액

제5조(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)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
2.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(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), 여객자동차터미널, 여객터미널, 공항 등에 설치·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
3. 관내 산하기관,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

4. 군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·보급

5.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29조에 따라 두는 증평균 주소정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소방, 경찰,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
2.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군의 특성과 역사,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,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

## 증평균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

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(改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.

제12조(위원회의 회의록 작성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토의 및 진행사항
4. 위원·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3조(손해배상 공제가입)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4조(주소정보의 홍보·교육)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민방위·예비군 교육, 각종 단체의 회의·행사·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군 관할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위탁)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
2.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·재교부에 관한 사항

3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4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·배포
  5.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  6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
  7.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8.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관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
  9. 영 제5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
  10.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 외에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1. 주소정보시설의 종류, 수량, 위치
  2. 계약기간 및 금액
  3.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
  4.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
  5. 주소정보시설의 훼손·망실에 따른 조치계획
  6.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
  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칙(2021. 10. 8 조례 제988호 전부개정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